# 폐기물 관리 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집, 보관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본교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"지정폐기물", "의료폐기물"에 적용한다.
- 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① "폐기물"이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.
  - ② "지정폐기물"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, 폐산, 폐석면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로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(지정폐기물의 종류) 별표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.
  - ③ "의료폐기물"이라 함은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,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.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(의료폐기물의 종류) 별표2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.
- 제4조(금지사항) 교내이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① 실험실에 폐기물을 방치하는 행위
  - ② 일반쓰레기와 함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
  - ③ 폐기물관리법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행위
- 제5조(폐기물 수집 및 보관) 폐기물 수집 및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
  - ①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실별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 및 보관 하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.
  - ② 연구실 책임자는 폐기물별 보관용기에 폐기물을 수집하고 보관용기가 쓰러져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
  - ③ 실험실에서 폐기물을 폐기물보관소로 반출 시에는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 폐하여 폐기물처리 담당자와 협의하여 반출하여야 한다.
  - ④ 실험실에서 폐기물 반출 시 폐기물처리담당자는 보관용기에서 폐기물 유출 및 밀폐상태 등을 확인하여 한다.
  - ⑤ 폐기물처리담당자는 실험실에서 수거된 폐기물을 종류별, 성분별로 격리하여 안 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.

제6조(폐기물 처리)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연구실 책임자는 폐기물을 보관기간 내에 처리 하여야 한다.
- ② 폐기물운반업체,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- ③ 폐기물 유출 및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하여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록 및 보존) 폐기물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하는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 및 보존 한다.

# 부 칙

이 제정 규정은 2008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# [별표 1]<개정 2016.1.19.>

# 지정폐기물의 종류(제3조 관련)

- 1.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
  - 가. 폐합성 고분자화합물
    - 1) 폐합성 수지(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)
    - 2) 폐합성 고무(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)
  - 나. 오니류(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)
    - 1) 폐수처리 오니(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)
    - 2) 공정 오니(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)
  - 다. 폐농약(농약의 제조·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)
- 2. 부식성 폐기물
  - 가. 폐산(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.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)
  - 나. 폐알칼리(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.5 이상인 것으로 한 정하며,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)
- 3. 유해물질함유 폐기물(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)
  - 가. 광재(鑛澤)[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(高爐)슬래그(slag)는 제외한다]
  - 나. 분진(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,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한다)
  - 다.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(廢砂)
  - 라. 폐내화물(廢耐火物)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
  - 마. 소각재
  - 바. 안정화 또는 고형화·고화 처리물
  - 사. 폐촉매
  - 아.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[광물유·동물유 및 식물유{폐식용유(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·조리·가공하는 과정, 식용유를 유통·사용하는 과정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. 이하같다)는 제외한다}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(廢土砂)를 포함한다]
  - 자. 폐형광등의 파쇄물(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)
- 4. 폐유기용제
  - 가. 할로겐족(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한정한다)
  - 나. 그 밖의 폐유기용제(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)
- 5. 폐페인트 및 폐래커(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)

- 가. 페인트 및 래커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래커 제조업,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(塗裝)시설, 페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
- 나. 페인트 보관용기에 남아 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다. 페페인트 용기(용기 안에 남아 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, 그 잔존량이 용기 바닥에서 6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6. 폐유[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,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(PCBs)함유 폐기물, 폐식용유와 그 잔재물,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한다]

#### 7. 폐석면

- 가.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·설비 (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) 등의 해체·제거 시 발생되는 것
- 나.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·절단·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·절단·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
- 다.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(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·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)·방진마스크·작업복 등
- 8.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
  - 가. 액체상태의 것(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)
  - 나. 액체상태 외의 것(용출액 1리터당 0.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)
- 9. 폐유독물질[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하되, 제1호다목의 폐농약(농약의 제조·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), 제2호의 부식성 폐기물, 제4호의 폐유기용제 및 제8호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은 제외한다]
- 10. 의료폐기물(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·검사 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)
- 11.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물질

#### [별표 2]<개정 2016.1.19.>

# 의료폐기물의 종류(제4조 관련)

- 1. 격리의료폐기물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 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. 위해의료폐기물
  - 가. 조직물류폐기물 :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·장기·기관·신체의 일부, 동물의 사체, 혈액·고름 및 혈액생성물(혈청, 혈장, 혈액제제)
  - 나. 병리계폐기물 : 시험·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, 배양용기, 보관균주, 폐시험관, 슬라이드, 커버글라스, 폐배지, 폐장갑
  - 다. 손상성폐기물 : 주사바늘, 봉합바늘, 수술용 칼날, 한방침, 치과용침,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
  - 라. 생물·화학폐기물 : 폐백신, 폐항암제, 폐화학치료제
  - 마. 혈액오염폐기물 : 폐혈액백,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,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
- 3. 일반의료폐기물 : 혈액·체액·분비물·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, 붕대, 거즈, 일 회용 기저귀, 생리대, 일회용 주사기, 수액세트

## 비고

- 1.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.
- 2.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, 용기 등은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.